



# 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(약칭: 이러닝산업법)

[시행 2015.1.28.] [법률 제13091호, 2015.1.28., 일부개정]

산업통상자원부 (창의산업정책과) 044- 203- 4366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.7.25.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이러닝"이란 전자적 수단, 정보통신 및 전파·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.
2. "이러닝콘텐츠"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·문자·도형·색채·음성·음향·이미지·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.
3. "이러닝산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업(業)을 말한다.
  - 가.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·개발·제작·수정·보관·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
  - 나. 이러닝의 수행·평가·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
  - 다.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
4. "이러닝사업자"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5. "자유이용정보"란 「저작권법」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말한다.
6. "공공정보"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.
7. "교육기관"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.
8. "공공기관"이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1.7.25.]

**제3조(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)**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7.25.]

**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,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1.7.25.]

##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<개정 2011.7.25.>

**제5조(국가의 책무)**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, 개인·기업·지역·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, 이러닝 관련 기술·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7.25.]

**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8

- 1.
- 2.
- 3.
- 4.
- 5.
- 6.
- 7.
- 8.
- 9.
- 10.

[ 2011.7.25.]

7 ( )

( " " )

[ 2011.7.25.]

8 ( )

" " ) . < 2011.7.25., 2013.3.23.>

- 1.
- 2.
- 3.
- 4.

1 1 20

3

< 2011.7.25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5.1.28.>

- 1.
- 2.
- 3.

3

가 2

1

1

.< 2011.7.25., 2013.3.23.>

<2009.4.1.>

1 3

2011.7.25.>

[ 2011.7.25.]

3

< 2011.7.25.>

9 ( )

「 」 2

, 「 」 33 3

[ 2011.7.25.]

10 ( )

- 1. , .
- 2. ,
- 3.
- 4. .
- 5. .

[ 2011.7.25.]

11 ( )

- 1. 「 」 12 . .
- 2. .
- 3.
- 4.

1

.< 2013.3.23.>

[ 2011.7.25.]

12 ( )

.< 2013.3.23.>

1

[ 2011.7.25.]

13 ( )

1

1

「

」 13

1

, 2

3

[ 2011.7.25.]

14 ( )

「

」 26

「

」

1

[ 2011.7.25.]

4 < 2011.7.25.>

15 ( )

[ 2011.7.25.]

16 ( )

.< 2013.3.23.>

2

.< 2013.3.23.>

[ 2011.7.25.]

17 ( )

「 」 2 6

가 1 2

[ 2011.7.25.]

17 2( )

.< 2013.3.23.>

.< 2013.3.23.>

[ 2011.7.25.]

18 ( )

[ 2011.7.25.]

19 ( )

」,

「 」, 「

[ 2011.7.25.]

20 ( ) 15 17 17 2

- 1.
- 2.
- 3.

2

1

가 2

5

1

, 3

, 4

[ [2011.7.25.](#) ]

20 2( 가 )

가

. < [2013.3.23.>](#)

[ [2011.7.25.](#) ]

20 3( 가 )

가

가

1

. < [2013.3.23.>](#)

[ [2011.7.25.](#) ]

20 4( )

. < [2013.3.23.>](#)

1

가

. < [2013.3.23.>](#)

1

[2013.3.23.>](#)

[ [2011.7.25.](#) ]

20 5( )

,

(

"

"

)

가

. < [2013.3.23.>](#)

1

2

[ [2011.7.25.](#) ]

21 ( )

(

"

"

)

1

[ [2011.7.25.](#)]

22 ( )

가

「 」 9

[ [2011.7.25.](#)]

23 ( )

1

1 2

[ [2011.7.25.](#)]

24 ( )

, , 가 ,

[ [2011.7.25.](#)]

25 ( )

「 」, 「 」

가

(

" " )가

< [2013.3.23.>](#)

(公示)

.<

[2013.3.23.>](#)

2 3

.< [2013.3.23.>](#)

[ [2011.7.25.](#)]

26 ( )

가

25 3

[ [2011.7.25.](#)]

27 ( )

· 「 」 ·

< [2013.3.23.>](#)

1

2

1

[ [2011.7.25.](#)]

< 13091 ,2015.1.28.>

1 ( )

· , 13

6

2 (

)

13 1

3

13 3